

# 建築法施行規則中改正令

건축법 시행규칙중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1980년 12월 22일

建設部長官

건축법 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항중 “령 제5조 제2항”을 “령 제5조 제3항”으로 하고, 동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동항 표의 (1)난중 “부근 안내도”의 난을 삭제하고, 동표의 (12)난중 “법 제22조의 2의 규정”을 “주차장법의 규정”으로 한다.

다만, 건축사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당해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와 배치도 및 다음 표의 (2)난 및 (13)난에 제기하는 해당도서에 한한다.

제1조 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근 안내도·배치도와”를 삭제하고, 동항 단서중 “령 제5조 제2항”을 “령 제5조 제3항”으로 한다.

제1조 제3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근안내도·배치도.”을 삭제한다.

제1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시장·군수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제기하는 첨부서류 이외에 법·영 또는 조례의 규정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함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위하여 건설부장관이 따로 정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의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의 2 (검사업무의 대행시등에 있어서의 제출서류) 건축사법 제2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으로 건축사무소를 등록한 자 또는 종합건축사 사무소를 등록한 자가 검사업무의 대행등으로 인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준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한 확인서를 건축허가신청서 또는 준공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 및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 (건축물의 열손실방지를 위한 조치) 건설부장관이 지정·공고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1. 거실의 외벽과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열관류율의 값이 0.5Kcal/m<sup>2</sup>h°C이하의 구조 또는 별표로 정하는 두께 이상의 단열재에 의한 단열시공
2.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거실의 외기에 면하는 바닥을 포함한다) : 열관류율의 값이 1.0Kcal/m<sup>2</sup>h°C이하인 구조 또는 별표로 정하는 두께의 2분의 1 이상의 단열재에 의한 단열시공

3. 거실의 외기에 면하는 창 : 열관류율의 값이 3.0Kcal/m<sup>2</sup>h°C이하인 구조에 의한 시공 또는 2중창이나 복층유리(케 어그라스)에 의한 시공

제28조 내지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 (건축재료)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 장관이 인정하는 건축재료는 주택건설 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차재 생산업의 등록을 한 자가 생산한 건축재료로서 주택건설 촉진법 또는 공산품 품질 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제29조 (공사현장의 위해방지) ① 3층이상인 건축물의 공사현장의 주위에는 그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1.8미터 이상이 되는 가설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와 동등이상의 효력을 가진 주위 시설물이 있거나 공사현장의 주변환경 또는 공사의 상황에 따라 위해 방지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사현장의 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5미터 이내이고,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5미터 이상인 장소에서 잔재 등을 투하할 때에는 다스트슈트를 비용하는등 공사현장 주변에 잔재의 비산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공사용 재료는 도괴등의 경우에 그 위해의 범위가 가장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안전하게 적치하여야 한다.

④ 공사에 있어서 화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불연재료로 작업장을 구획하는 등 방화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공사현장에 고압전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위험표시 및 절연시설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 (지역안의 건축물) ① 령 별표 1 제2항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령 부표 제4항중 제1호 내지 제5호에 제기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② 령 별표 2 제9항, 령 별표 3 제4항 및 별표 제2항에서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비공해공장”이라 함은 공업배치법 시행령 별표 2에 해당하는 업종의 공장(제재업 및 연탄제조업을 제외한다)으로서 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별 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2호서식]을 삭제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5호서식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 표]

단열재의 두께기준		비 고
재 료 명	두께 (m/m)	
유 리 면	50	각 재료는 동력자원부장관의 형식 승인을 받아 생산한 건축물의 보온재이어야 한다.
난연성발포폴리스티렌폼	0	
포 리 우 레 탄 폼	50	
요 소 발 포 보 온 재	50	
암 면 (광 석 면)	60	
석 면	60	
규 산 칼 습	60	
탄 산 마 그 네 습	70	
코 르 크	70	
퍼 라 이 트	100	
기 타 (열전도 저항의 값이 1.6m <sup>2</sup> h°C/Kcal이상 되는두께)		

[별지 제1호서식]

허가번호 제 호		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처리기간	
1. 신청내역				5일	
건축주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설계자	④성명			⑤면허번호	
	⑥사무소명			⑦등록번호	
	⑧주소	(전화)			
배치	⑨위치				
	⑩지역			⑬지목	
	⑪지구			⑭전면도로폭	
	⑫면적			⑮도로에 접한 면적	
용도	⑯주용도				
	⑰기타용도				
규모	구분 면적	신청부분	신청이외부분	합계	공사종별
		⑱건축면적			⑳진퇴율
	⑳면적			㉑용적률	
	㉒구조			㉓층수	

2805-04-48(2-1)E(2) 190mm×268mm  
80.11.10승인 (인쇄용지(특급)70g/m<sup>2</sup>)

2. 신청건축물등별개요		( )매층	
⑳주용도		㉔공사종별	
㉕기타용도		㉕층수	
바닥면적	구분	층별	층 수
	⑳신설부분	층	층
		㉑신설이외부분	
㉒합계			
㉑기둥치수 또는 내력벽의 두께			
㉒원가재지점간의 거리			
㉓층높이			
㉔기실의 반자높이			
구조	㉕주요구조부	㉖지붕	
	㉖기초	㉖지마	
단면	㉗벽체	㉗콘크리트설계강도	kg/cm <sup>2</sup>
	㉘외벽	㉘마단	
단면	㉙반자	㉙강도	
	㉚최고높이	㉚지마높이	
㉛채광면적비율		㉛지붕계단의 수	
㉜승용승강기대수		㉜비상용승강기대수	
㉝난방방식		㉝연소형식	
㉞전기설비용량		㉞기타	

2803-04-08 (2-2)E 190mm×268mm  
(인쇄용지(특급) 70g/m<sup>2</sup>)

※작성요령

-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고 단위는 미피법으로 하시오
- 용도는 건축법시행령부표(용도분류표)에 의거 구분하여 기입하시오
-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자연녹지, 생산녹지 지역 및 풍치지구내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안을 따로 삭제 하시오
- 신청건축물의 등면개요는 등마다 따로 작성하여 첨부하시오
- ㉑란은 그 층에 있는 기둥 또는 내력벽의 치수중 최소의 것을 기입하시오
- ㉒란은 그 층에 있는 횡가재 지점간의 거리중 최대의 것을 기입하시오
- ㉓란은 그 층의 층고중 최대의 것을 기입하시오
- ㉔란은 그 층에 있는 기실의 반자높이중 최소의 것을 기입하시오
- ㉕란은 목조, 조적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등으로 기입하시오
- ㉖란은 기초형식을 기입(예 : 콘크리트 말뚝의 부설기초)
- ㉗란은 주재료를 기입하시오
- ㉘란은 지붕구조 방식 및 재료등을 기입(예 : 철골콘크리트스웨이브)
- ㉙란은 치마의 외장재료를 기입하시오
- ㉚란은 콘크리트 4 주입후 강도를 기입하시오
- ㉛~㉜란은 단열재료 및 두께 또는 열관류율을 기입하시오
- ㉝란은 연탄아궁이식 온돌, 온수난방, 증기난방등으로 기입하시오
- ㉞란은 수채식, 채거식으로 기입하시오
- ㉟란은 전기설비 용용량을 기입하시오

㉑지하층면적	㉑주각장면적	19	19	신청자	(시 장 · 군 수) 19	수수로	
㉑표준설계도서번호	㉑준공예정일						
㉑건축법 제 5조(및 도시계획법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및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참부) 1. 배치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설계도서 1부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1. 배치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배치도 1부 3. 건축법시행규칙 제 1조제 1항 표의 ㉑난 및 ㉑난에 끼기하는 해당도서 각 1부							
이 허가서 및 첨부서류에 기재한 건축물의 건축계획은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하므로 건축법 제 5조(및 도시계획법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합니다.							
						19	(시 장 · 군 수)

[별지 제 5호서식]

작성신고서		처리기간	
1. 신고내용		주 시	
※ 접수번호			
① 건축장소	시도	지구	
	동리	번지(봉 반)	
② 건축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③ 설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주소	(전화)	
④ 공사감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주소	(전화)	
⑤ 공사시공자	성명 또는 상호	건설업 면허번호	
	주소	(전화)	
⑥ 허가일자	19 . . . . .	⑦ 허가번호	제 호
⑧ 착공일자	19 . . . . .	⑨ 공작자 예정기간	19 . . . . . 부터 19 . . . . . 까지
건축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작공 신고합니다.			
19			
귀하		신고인	⑩
구비서류		수수료	
동별건축내용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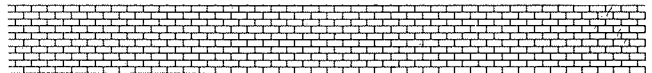
2805-04-49(2-2) E(3) 190mm×268mm  
80.11.10 승인 (인쇄용지(2급) 60g/㎡)

기재요령

- ※표한 남은 기재하지 말 것.
-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하고 소숫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정수란 기재할 것.
- 동별 건축내용은 매동별로 작성하여 제출할 것. 단, 부속용도에 사용되는 사무실·작업장·창고·차고·경비실·빈소 기타 유사한 부속건축물은 별개의 동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의 주된 건축물에 포함시킬 것.
- 항목별 기재요령
  - 가. ①②③④⑤⑥⑦⑧⑨는 □안에 해당하는 번호를 기재할 것.
  - 나. ⑩ 건축주: "정부"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입법기관·사업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 교육위원회등을 말하며, "정부투자기관"이라 함은 정부투자기관관리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체 및 한국은행을 말한다.
  - 다. ⑪ 건축물의 용도: 대중음식점·복합방·떡방아간·고등학교·무역회사사무소·방직공장 건이물 창고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기입할 것이며 동일 동내에 용도가 다른 부분이 있을 때는 최대의 바닥면적을 점유하고 있는 주된 용도를 기재한다. 단, 주택부분이 연면적의 2분의 1 미만일 때에는 주택면적이 최대인 경우에도 주거용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다음으로 면적이 큰 용도를 주용도로 하되 ⑫이하의 난에는 해당사항을 기입하여야 한다.
  - 라. ⑫ 건축물의 구조: 기둥 또는 내력벽을 어떠한 재료로 건축하는가에 따라 구분할 것.
  - 마. ⑬ 주택의 형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구분할 것.
  - 바. ⑭ 주택부분의 공사면적: 연립주택·아파트에서는 공용부분의 면적도 포함되며, 병용주택 기타에서는 주거용에 사용되는 면적만으로 한다.

2. 동별건축내용		동별번호	
⑮ 건축주	1. 정부 2. 정부투자기관 3. 법인 4. 개인 5. 기타		
⑯ 공사종별	1. 신축 2. 증축 3. 개축 4. 재축 5. 이전		
⑰ 건축물의 용도	( )용 건축물	※	
⑱ 건축물의 구조	1. 목조 2. 초적조 3. 일관콘크리트조 4. 철골조 5. 철골연관콘크리트조 6. 기타		
⑲ 공사부분의 면적	신축만 천 제 십 일		㎡
⑳ 신축공사의 경우	(지바승의 승수는 신축하지 아니함)		층
㉑ 보충공사의 경우	(신축건축물이 2층 이상인 경우는 1회만 기입함)	백만 제만 천 제 십 일	㎡
주택 또는 주택을 포함할 때			
㉒ 사실주제	1.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 2. 동독일자 3. 지정일자 4. 주택조합 5. 기타		
㉓ 주택의 형태	1. 단독주택 2. 연립주택 3. 아파트 4. 기타		
㉔ 주택의 종류	1. 전용주택 2. 병용주택 3. 기타		
㉕ 주택부분의 면적	만 천 제 십 일		㎡
㉖ 신축 면적 수 (세 배 수)	(신축 및 보수의 증가를 수반하는 증축의 경우에 함함)		호 (세대)

2805-04-49(2-2) E(3) 190mm×268mm  
80.11.10 승인 (인쇄용지(2급) 60g/㎡)



◎建設部令第280號

# 建築物着工統計調査 施行規則中改正令

건축물 착공통계조사 시행규칙중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1980년 12월 22일

建設部長官



- 건축물 착공통계조사시행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통계법 제2조 제2호 및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통계로 작성하는 건축물의 착공통계조사(이하 "착공조사"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6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공사에 착수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착공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건축법시행령 제 5 조 제 2 항 또는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권한을 위임 받은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7 조 중 제 1 호 및 제 2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 조 제 3 호 “가” 목 후단을 삭제한다.

1. 건축물 착공조사

- 가. 건축주
- 나. 건축장소
- 다. 공사종별
- 라. 건축물의 용도
- 마. 건축물의 구조
- 바. 연면적
- 사. 층수
- 아. 대지면적

2. 주택착공조사

- 가. 주택의 형태
- 나. 주택의 종류
- 다. 주택의 면적
- 라. 주택의 호수
- 마. 주택의 사업주체

제 8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8 조 (착공조사표의 작성) 제 6 조의 규정에 의하여 착공신고서를 접수한 기관의 장은 그 기재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 2 호 서식에 의한 건축물 착공통계조사표(이하 “착공조사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 9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9 조 (착공조사표의 제출) ① 시장(서울특별시 및 부산시

장을 포함한다)군수는 제 8 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착공조사표를 취합하여 익월 5 일까지 도지사(서울특별시 및 부산시장을 제외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 또는 송부된 착공조사표 및 별지 제 3 호 서식에 의한 건축물 착공신고총괄표를 1월 10일까지 건설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 10 조 제 1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건설부장관은 착공조사결과와 보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원으로 하여금 보정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 12 조의 제목 “(착공신고서용지의 청구 및 배부)”를 “(착공조사표용지의 청구 및 배부)”로 하고, 동 조 제 1 항·제 2 항 및 제 3 항 중 “착공신고서용지”를 각각 “착공조사표용지”라 한다.

제 13 조의 제목 “(신고서 및 결과표의 보존)”을 “(착공조사표의 보존)”으로 하고 동 조 중 “착공신고서와 총괄표”를 “착공조사표”로 한다.

[별지 제 1 호 서식] · [별지 제 2 호 서식] 및 [별지 제 3 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 1 호 서식]

착공 신고서		처리기간
1. 신고내용		즉 시
※ 접수번호 □□□□		
① 건축장소	시도 시군구 동리	번지(분반)
② 건축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③ 설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④ 공사감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⑤ 공사상시공자	성명 또는 호	건설업면허번호
	주소	(전화)
⑥ 허가일자	19 . . . . .	⑦ 허가번호
⑧ 착공일자	19 . . . . .	⑨ 공사예정기간
건축법 제 7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착공 신고합니다.		
19 . . . . . 신고인		
귀하		⑩
구비서류	수수료	
동별건축내용	없 음	

2805-04-49(2-2) E (3) 190mm×268mm  
80. 11. 10 승인 (인쇄용지(2급) 60g/m<sup>2</sup>)

기 제 요 령

1. ※ 포함 남은 기재하지 말 것.
2.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하고 소숫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정수만 기재할 것.
3. 동별 건축내용은 매동별로 작성하여 제출할 것. 단, 부속용도에 사용되는 사무실·작업장·창고·차고·경비실·변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속건축물은 별개의 동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의 주된 건축물에 포함시킬 것.
4. 항목별 시계요령
  - 가.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남은 □안에 해당한 번호를 기재할 것.
  - 나. ① 건축주  
“정부”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입법기관·사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위원회등을 말하며, “정부투자기관”이라 함은 정부투자기관관리법시행령 제 2 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체 및 한국은행을 말한다.
  - 다. ② 건축물의 용도  
대중음식점·복덕방·떡방아간·고등학교·무역회사사무소·방직공장·건이물 창고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기입할 것이며 동일 동내에 용도가 다른 부분이 있을 때는 최대의 바닥면적을 점유하고 있는 주된 용도를 기재한다. 단, 주택부분이 연면적의 2분의 1 미만일 때에는 주택면적의 2분의 1 미만일 때에는 주택면적이 최대인 경우에도 주거용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다음으로 면적이 큰 용도를 주용도로 하되 ⑩이하의 남은 해당사항을 기입하여야 한다.
  - 라. ③ 건축물의 구조  
기둥 또는 내력벽을 어떠한 재료로 건축하는가에 따라 구분할 것.
  - 마. ④ 주택의 형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 2 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할 것.
  - 바. ⑤ 주택부분의 공사면적  
연립주택·아파트에서는 공용부분의 면적도 포함되며, 병용주택 기타에서는 주거용에 사용되는 면적만으로 한다.

[별지 제 2호서식]

지정 통계 제28호 (1975. 3.28)	<b>건축물착공통계조사표</b> (   년   월분)	작성일자 작성번호	년   월   일 계   호 (   )매중
행정구역번호 [   ] [   ] [   ] [   ] [   ]	접수번호                    동별번호                    전    주                    공사종별                    건축물의                    구    조                    공사부분의 면적	신축 공사의 경우                    주택 또는 주택을 포함할 때	
작성 부서 1                    2                    3                    4	층수                    대 지 면 적                    사업부                    형    태                    종    류                    주택부분의                    공사 면 적                    신축호수                    (세대수)		
기    록    자 직급                    성명	5                    6                    7                    8                    9                    10		

268mm × 380mm  
(인쇄용지(특급) 100g/㎡)

건축물용도분류표

- |   |   |
|---|---|
| <p>1. 주 거 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10 단독주택</li> <li>120 공   관</li> <li>130 연립주택</li> <li>140 아   파트</li> <li>150 기숙사(합숙소등을 포함한다)</li> </ul> <p>2. 농림수산업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10 축사(잡사, 양어시설등을 포함한다)</li> <li>220 부   화   장</li> <li>230 가축시장</li> <li>240 도   살   장</li> <li>250 농림수산업용 사무소</li> <li>260 농림수산업용 창고시설</li> <li>290 기타 농림수산업에 부수되는 건축물</li> </ul> <p>3. 광공업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10 공해공장</li> <li>320 일반공장</li> <li>330 위험물 제조소</li> <li>340 광공업용 사무소</li> <li>350 광공업용 창고시설</li> <li>390 기타 광공업에 부수되는 건축물</li> </ul> <p>4. 상   업   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10 근린생활시설</li> <li>420 일반업무시설(농림수산업용 또는 광공업용사무소를 제외한다)</li> <li>430 숙박시설</li> <li>440 판매시설(자동차매매장 및 자동차부속상을 포함한다)</li> <li>450 위락시설</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60 창고시설(농림수산업용 또는 광공업용 창고시설을 제외한다)</li> <li>490 기타 상업에 부수되는 건축물</li> </ul> <p>5. 공   공   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10 근린공공시설</li> <li>520 공공업무시설</li> <li>530 교정시설</li> <li>540 군사시설</li> <li>550 전신전화국</li> <li>590 기타 공공의 용에 공하는 건축물</li> </ul> <p>6. 문   교   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610 교육시설</li> <li>620 연구시설</li> <li>630 도   서   관</li> </ul> <p>7. 사   회   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710 종교시설</li> <li>720 노유자시설</li> <li>730 의료시설</li> <li>740 운동시설</li> <li>750 관람집회시설</li> <li>760 전시시설</li> <li>770 통신·환영시설(전신전화국을 제외한다)</li> <li>780 묘지관련시설</li> <li>790 관광휴게시설</li> </ul> <p>8. 기    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810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 제조소를 제외한다)</li> <li>820 운수시설</li> <li>830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매매장 및 자동차부속상을 제외한다)</li> <li>840 진에 및 오물처리장</li> <li>890 타에 분류되지 않는 건축물</li> </ul> |
|---|---|

2. 동일건축내용		① 동일번호 □□□□
① 건축 수	1. 경부 2. 경부투자기관 3. 법인 4. 개인 5. 기타	□
② 공사종별	1. 건축 2. 중축 3. 계축 4. 재축 5. 이전	□
③ 건축물의 용도	( )용 건축물	※ □□□□
④ 건축물의 구조	1. 목조 2. 프레임조 3. 철근콘크리트구조 4. 철골조 5.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6. 기타	□
⑤ 공사부분의 면적	합계 만 평 제 십 일	□□□□□□□□ m <sup>2</sup>
⑥ 건축공사의 층수	(지하층의 층수는 산입하지 않음)	□□층
⑦ 건축공사의 평면적 면적	(건축건축물이 2동이상인 경우는 1회만 기입함)	평면합계 만 평 제 십 일 □□□□□□□□ m <sup>2</sup>
주덕 또는 구역을 포함한 지		
⑧ 사업주자	1. 경부 또는 경부투자기관 2. 등록업자 3. 지정업자 4. 주택조합 5. 기타	□
⑨ 주택의 형태	1. 단독주택 2. 연립주택 3. 아파트 4. 기타	□
⑩ 주택의 종류	1. 전용주택 2. 방형주택 3. 기타	□
⑪ 주택부분의 공사 면적	만 천 제 십 일	□□□□□□□□ m <sup>2</sup>
⑫ 신청호수 (세내수)	(건축 및 호수의 증가를 수반하는 중축의 경우에 함함)	□□□□호 (세내)

2805-04-49(2-2) E (3)  
80. 11. 10승인

190mm x 268mm  
(인쇄용지 (2 입) 60g/m<sup>2</sup>)

[별지 제 3 호 서식]

시도 건축물 착공신고 총괄표					
합계	전수		동수		
	전수	동수	시군구별	전수	동수
시군구별					

190mm x 268mm  
(인쇄용지 50g/m<sup>2</sup>)

- (66페이지에 繼續)
- (2)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3) 보궐 위원회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44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위원장, 부위원장이 고무 유고시에는 시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5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원은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하여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제46조 (소위원회)** (1)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2) 소 위원회에는 책임 위원을 두고 소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하게 한다.
  - (3) 소 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원중에서 호선하는 3인 이상 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 (4) 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중 위원회가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가름할 수 있다.
  - (5) 소위원회는 전원출석으로 개최하고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47조 (전방위원)** (1) 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 또는 연

- 구를 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약간인을 둘 수 있다.
- (2) 전문위원은 건축 및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의 재청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 (3)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전할 수 있다.
- 제48조 (간사 및 서기)**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 (2) 간사는 주택과장이 되고 서기는 주택과 건축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 제49조 (회의록의 비치 및 보고)** (1)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2) 위원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을 시장에 보고 하여야 한다.
- 제50조 (자료제출의 요구등)** (1)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 소속하의 공무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출석 또는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2) 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관계 공무원의 합동 조사를 편성할 수 있다.
- 제51조 (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전문위원과 제51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청된 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52조 (비밀준수)** 위원회 위원, 전문위원, 간사 및 서기와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다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